

<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 >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

주 소 :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금융위원회 인